

# ORIGIN CASE

Vol. 10



- Case 1 톱날
- Case 2 임신 진단키트
- Case 3 승용차
- Case 4 PBAT 컴파운드 (제3907.99호)
- Case 5 글리신 (제2922.49호)
- Case 6 회전일자 (제9401.39호)
- Case 7 가슴기
- Case 8 저전압 케이블
- Case 9 베어링 셀
- Case 10 래칫 타이 다운 (제8479.89호)



한국원산지정보원



# CONTENTS

Case 1.	톱날	1
Case 2.	임신 진단키트	5
Case 3.	승용차	10
Case 4.	PBAT 컴파운드 (제3907.99호)	16
Case 5.	글리신 (제2922.49호)	21
Case 6.	회전의자 (제9401.39호)	24
Case 7.	가습기	28
Case 8.	저전압 케이블	32
Case 9.	베어링 셀	35
Case 10.	래칫 타이 다운 (제8479.89호)	39





case

1

톱날

요약

사례명	<b>톱날</b>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735086 (1993.10.20.)
사실관계	중국에서 중국산 톱날 블랭크에 미국산 카바이드 팁, 은납을 납땜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후, 미국에서 카바이드 팁을 연마하여 최종 제품인 톱날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에서 팁을 연마하는 공정은 톱날의 명칭, 성질, 용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며, 이를 위해 복잡한 기술이나 작업이 수행된 것도 아니므로,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li> <li>- <b>명칭</b> 수입 당시 팁이 연마되지 않은 상태여도 여전히 톱날이라고 불리며 미국 내 가공으로 물품의 명칭이 변경되지 않음</li> <li>- <b>성질</b> 수입 당시 이미 톱날의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공정을 통해 제품이 정제될 뿐 성질이 바뀌지 않음</li> <li>- <b>용도</b> 수입된 톱날은 쉽게 회전식 톱날로 인식되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가공 후에도 크기와 형태가 변하지 않음</li> </ul>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li> <li>-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li> </ul>

I 판정사례<sup>1)</sup>

**사 례 명** [톱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735086 (1993.10.20.)

**사실관계**

<b>요청자</b>	Dalex	
<b>제품명</b>	• rotary steel saw blades	
<b>제품</b>	<b>구성</b>	• 톱날 블랭크 (중국산) • 카바이드 팁 (미국산) • 은납 (미국산)
	<b>용도</b>	• 절삭 공구용

**제조과정**



**01**

미국산 카바이드 팁,  
은납을 중국으로 수출



**02**

중국산 톱날 블랭크에  
납땜 후 미국 수출



**03**

미국에서  
마무리 공정

**상세공정**

1. 미국에서 절삭용 카바이드 팁, 은납을 제조하여 중국으로 수출
2. 중국에서 톱날 블랭크 제작
3. 중국에서 톱날 블랭크에 카바이드 팁을 납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
4. 미국에서 톱날을 샌드블라스트, 연마 후 상단 및 측면 연삭

1)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a)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a))』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다음의 사례들을 참고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40134 (1987.02.06.)*

**사례** 톱날 블랭크에 톱니 연삭 및 기타 사소한 공정 수행

**판정** 톱니가 최종 제품의 본질적 성질을 결정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므로 톱날 블랭크는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3837 (1991.02.05.)*

**사례** 미국에서 톱날 블랭크에 톱니를 연삭하는 유사한 공정 수행

**판정** 해당 공정으로 톱날 블랭크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

- 일정 국가에서 행해진 공정으로 인해 물품의 가치 증가했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Slip Op. 96-61 (April 27, 1992) *aff'd* 989 F.2d 1201 (1993)

## 판정 결과

- ☑ 미국에서 톱날의 카바이드 팁을 연마하는 공정은 톱날의 명칭, 성질, 용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며, 이를 위해 복잡한 기술이나 작업이 수행된 것도 아니므로, 미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명칭) 수입 당시 팁이 연마되지 않은 상태여도 여전히 톱날이라고 불리며 미국 내 가공으로 물품의 명칭이 변경되지 않음
  - (성질) HQ 740134, HQ 733837과 달리 수입 당시 이미 톱날의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공정을 통해 제품이 정제될 뿐 성질이 바뀌지 않음

**관련 법령  
및 분석**

- (용도) 수입된 톱날은 쉽게 회전식 톱날로 인식되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가공 후에도 크기와 형태가 변하지 않음
- ☑ 신청자는 톱날 제조 비용의 대부분이 미국산 부품이나 미국 내 작업에 기인하므로 미국산이라고 주장하나 National Hand Tool Corp. 사례와 같이 물품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미국 내 발생 비용을 고려하여도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 미국 내 작업 비용과 부품 비용이 톱날 제조 총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사업 운용 비용이 중국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중국에서 행해진 공정보다 중요하다거나 더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미국에서의 가공이 중국에서의 작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미국에서의 공정 이후에도 톱날은 여전히 중국산임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톱날의 원산지는 중국임

**II 시사점**

- 이미 톱날로서의 성질이 형성된 경우, 팁을 연삭하는 단순한 공정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735086 (1993.10.20.), <https://rulings.cbp.gov/ruling/735086>
- CBP Ruling HQ 733837 (1991.02.05.), <https://rulings.cbp.gov/ruling/733837>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2

## 임신 진단키트

### 요약

사례명	<b>임신 진단키트</b>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560613 (1997.10.28.)
사실관계	미국산 및 독일산 구성품들을 아일랜드로 수입한 후, 아일랜드에서 미국산 항체를 고체 물질에 부착하고 아일랜드산 부품을 추가하여 조립하는 등 최종 조립하여 임신 진단키트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임신 진단키트의 본질적 특성은 특정 호르몬과 반응하여 임신 여부를 감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산 항체에 의해 부여되고, 아일랜드에서 항체를 고체 물질에 부착하고 하우징에 단순 조립하는 공정은 사용자 편의를 높일 뿐 항체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임신 진단키트의 원산지는 항체의 원산지인 미국임</li></ul>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li><li>-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li></ul>

I 판정사례<sup>2)</sup>

**사 례 명** [임신 진단키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560613 (1997.10.28.)

**사실관계**

<b>요청자</b>	Selfcare, Inc.	
<b>제품명</b>	• early pregnancy test kit	
<b>제품 구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부 하우징, 하부 하우징, 캡, 위크, 939지, 901지, 단일클론 항체 107("MAb 107"), 단일클론 항체 105 ("MAB 105"), 대조 항체, 라미네이트, 니트로셀룰로오스(nitrocellulose), 테트라클로로금산 수화물(hydrogen tetra chlorauric hydrate): 미국산</li> <li>• 스플래시 가드: 아일랜드산</li> <li>• 8mm 레이온: 독일산</li> </ul>	
<b>용도</b>	• 소변 샘플과 접촉할 때 일으키는 반응으로 임신 여부 진단 (소매용)	

**제조과정**



- 상세공정**
1. 미국산, 독일산 구성품 아일랜드로 수입
  2. 아일랜드 제조 공정
    - (1) 액상 상태로 수입된 미국산 항체를 고체 재질 위에 부착
      - MAb 105와 대조 항체를 니트로셀룰로오스에 얇게 두 줄로 분사 후 건조

2)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테트라클로로금산 수화물을 물에 희석하여 클로로금산으로 만들고 이를 물과 구연산나트륨과 함께 끓여 분홍/보라색 금 용액을 생산
  - MAb 107과 금 용액으로 레이온 막에 코팅 후 건조
  - (2) 니트로셀룰로오스와 레이온을 세제 용액에 담갔다가 건조된 901지·939지와 함께 라미네이트종이에 부착
  - (3) 완성된 라미네이트는 6.9mm의 스트립으로 절단 후 상부, 하부, 캡으로 구성된 하우징에 조립 및 위크 추가
  - (4) 완성된 스틱은 아일랜드산 제습제와 함께 포일 파우치에 넣어 밀봉
3. 미국 수출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다음의 사례들을 참고함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CIT 1986)

- 사례** 제조용 농축액을 사용하여 냉동 농축 오렌지 주스와 재구성된 오렌지 주스를 생산
- 판결** 제조용 농축액은 "비용, 가치 또는 수량으로 측정할 때 최종 제품의 주요 부분"이며 미국 내에서 냉동 농축 오렌지 주스로 만드는 추가 공정은 단순한 제조 공정에 불과함. 수입된 제조용 농축액이 소매 제품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미국에서 물, 오렌지 에센스 및 오일을 추가하여 소매 판매에 적합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근본적인 성질은 변하지 않음. 따라서 제조용 농축액은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음.

관련 법령  
및 분석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3248 (1990.08.22.)*

**사례** 미국 기증자로부터 채혈된 인체 혈액에 대해 여러 번의 침전, 원심분리 및 여과 과정을 거치며 단백질이 제거되고 시약이 혈장에 첨가되어 Immune Globulin (Human) Fraction II paste이 제조됨. 이 상태에서 희석제를 첨가하면 환자에게 근육주사로 사용할 수 있음. 이후 Fraction II는 벨기에로 보내져 추가적인 여과, 완충 및 기타 공정을 거쳐 대량 형태에서 복용 가능한 제형으로 전환되어 "IGIV"(Immune Serum Globulin Intravenous, 면역혈청글로불린 정맥주 사용)가 정맥주사에 적합하게 됨

**판정** 벨기에에서의 공정들이 제품을 정맥주사 형태로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긴 했지만, Fraction II 자체가 최종 제품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벨기에의 공정들이 제품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꾸지는 않았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음

**판정 결과**

- ☑ 항체는 아일랜드로 수입되기 전에 이미 임신 진단키트의 핵심 기능인 임신 호르몬의 감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아일랜드에서의 공정을 통해 이러한 기능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신 진단키트의 원산지는 항체의 원산지인 미국임
- ☑ 아일랜드에서 생산된 금 용액이 판정 결과를 식별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도 있겠으나, 여전히 소변 샘플과 반응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미국산 항체이며, 이러한 항체를 고체 물질에 부착하고 하우징에 단순 조립하는 등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임신 진단키트의 원산지는 미국임

II 시사점

- 임신 진단키트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 요소는 항체이며, 항체를 종이에 분사하거나 하우징에 결합하는 등의 공정은 소비자의 편의를 높일 뿐 항체의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항체의 생산국이 키트의 원산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560613 (1997.10.28.), <https://rulings.cbp.gov/ruling/560613>
- CBP Ruling HQ 733248 (1990.08.22.), <https://rulings.cbp.gov/ruling/733248>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3

승용차

요약

사례명	<b>승용차</b>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2821 (2019.07.26.)
사실관계	중국에서 다국적산 부품들을 사용하여 제작된 주요 서브어셈블리 3개(차체 어셈블리, 엔진 모듈, 후륜 서스펜션 모듈)와 기타 중국산 부품 및 유럽산 부품을 스웨덴으로 수입한 후, 스웨덴에서 최종 조립 과정을 거쳐 승용차 생산
쟁점 및 판정	<b>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b> • 중국에서 복잡한 조립 공정을 통해 최종 용도가 사전에 결정된 핵심 서브어셈블리가 생산되며, 스웨덴에서 이를 다른 부품들과 조립하여 승용차를 만드는 공정은 비교적 단순하여 서브어셈블리의 용도를 변경시키지 못하므로 보다 복잡한 공정이 수행된 중국이 원산지임
근거법령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판정사례<sup>3)</sup>

**사 례 명** [승용차]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2821 (2019.07.26.)

**사실관계**

**요청자** Volvo Car U.S. Operations Inc.

**제품명** • passenger vehicles

**제품**

**구성**

구분	부품명(원산지)
하드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디사이드, 도어, 리어선반, 테일게이트(이탈리아산)</li> <li>• 사이드미러(영국산)</li> <li>• 헤드램프(슬로바키아산)</li> <li>• 사이드 마커등(프랑스산)</li> <li>• A패널, C패널, 파노라마 루프(중국산)</li> </ul>
엔진 모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휘발유 엔진, 서브프레임(스웨덴산)</li> <li>• 기어박스, 프론트 서스펜션(일본산)</li> <li>• 전륜 브레이크(미국산)</li> <li>• 라디에이터, 스티어링 시스템(중국산)</li> </ul>
후륜 서스펜션 모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륜 서브프레임, 후륜 전기모터(스웨덴산)</li> <li>• 후륜 서스펜션(일본산)</li> <li>• 후륜 브레이크(독일산)</li> </ul>
기타 주요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드, 범퍼, 배터리 모듈, 온보드 충전기 및 인버터, 연료탱크 및 연료 필터 파이프, 배기 시스템, 호스 및 연료 라인, 언더바디 패널 및 히트 실드, 계기판, 터널 콘솔, 시트(중국산)</li> <li>• 고전압 케이블, 바퀴 (유럽산)</li> </ul>

**제조과정**



3)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상세공정**

1. 중국에서 다국적산 부품들을 사용하여 주요 서버어셈블리 생산
  - (1) 차체 어셈블리 조립 및 도장
  - (2) 엔진 모듈 조립
  - (3) 후륜 서스펜션 모듈 조립
2. 중국산 서버어셈블리 및 기타 부품, 유럽산 일부 부품을 스웨덴으로 수입
  - 한 대의 차량 제작에 필요한 구성품들을 컨테이너 두 개에 포장하여 단일 선적물로 또는 생산 계획상 전체 차량 제작에 필요한 구성품들을 분리된 선적물로 운송
3. 스웨덴에서 최종 조립
4.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현행 무역구제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분석이 적용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N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해당 부품들이 그 개별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573 F. Supp. 1149 (Ct. Int'l Trade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관련 판례 및 분석

-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음

❖ 참고 판정: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and C.S.D. 90-97*

-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702 F. 2d 1022 (Fed. Cir. 1983)*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각 구성 부품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공 정도, 해당 가공이 해당 물품에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부여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고려 사항임

- 이 외에도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이후의 검사 및 시험 절차의 범위와 성격, 제조 과정에서 요구되는 작업자의 숙련도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단일 요소는 결정적이지 않음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수입 후 가공이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 물리적 변형(physical change)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성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at 226, 542 F. Supp. at 1031,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제품의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서 이미 사전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다음의 사례들을 참고함

❖ 참고 판례: *CBP Ruling HQ H155115 (2011.05.24.)*

**사례** 전기차는 14개의 미국산 구성 요소를 포함한 총 31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종 제품의 조립은 미국에서 수행됨

**판정** 미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품과 노동력 모두에서 상당한 기여가 필요하며, 미국 내에서 수행된 공정으로 인해 부품들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전기차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으므로 원산지를 미국으로 판정함

관련 법령  
및 분석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118435 (2010.10.13.)*

**사례** 골프 및 레저용 전기차는 약 53개에서 62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그 중 12개에서 17개는 미국산이고 새시, 플라스틱 차체 부품 등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하여 미국산 배터리 팩, 모터 등과 조립함

**판정** 수입 부품 모두가 다른 미국산 부품과 조립해야 전기차로 기능할 수 있고 핵심 부품인 배터리 팩, 모터, 전자장치, 배선 어셈블리, 충전기가 모두 미국산이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조 공정으로 부품들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으므로 원산지를 미국으로 판정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022169 (2008.05.02.)*

**사례** 인도에서 생산된 미니트럭 글라이더(엔진, 변속기, 구동축, 배기-연료 시스템 등 내연 기관 차량의 일반적인 핵심 구성 요소는 포함되지 않음)를 미국으로 수입한 후, 모터, 배터리 팩, 기타 전자 장치 등의 구성 요소를 추가하여 전기 미니트럭을 생산함. 해당 제품은 약 87개의 서로 다른 구성품으로 조립되며, 이 중 68개가 미국산이고 미국산 구성품이 총 비용의 51%를 차지함

**판정** 상당수의 주요 부품이 미국산이고, 미국에서의 조립 공정을 통해 수입 글라이더의 고유의 정체성이 상실되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전기 미니트럭이 생산되므로 원산지를 미국으로 판정함

판정 결과

☑ HQ H155115, HQ H118435, HQ H022169와 달리 중국에서 3개의 주요 서브어셈블리를 생산하는 공정은 스웨덴에서 수행된 공정보다 복잡하며, 스웨덴에서의 공정을 통해 사전에 정해진 용도가 변경되지도 않으므로 승용차의 원산지는 주요 서브어셈블리가 생산된 중국임

결론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승용차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함

II 시사점

-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제품의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보다 복잡한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어디 인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2821 (2019.07.26.), <https://rulings.cbp.gov/ruling/H302821>
- CBP Ruling HQ H155115 (2011.05.24.), <https://rulings.cbp.gov/ruling/H155115>

- CBP Ruling HQ H118435 (2010.10.13.), <https://rulings.cbp.gov/ruling/H118435>
- CBP Ruling HQ H022169 (2008.05.02.), <https://rulings.cbp.gov/ruling/H02216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4

## PBAT 컴파운드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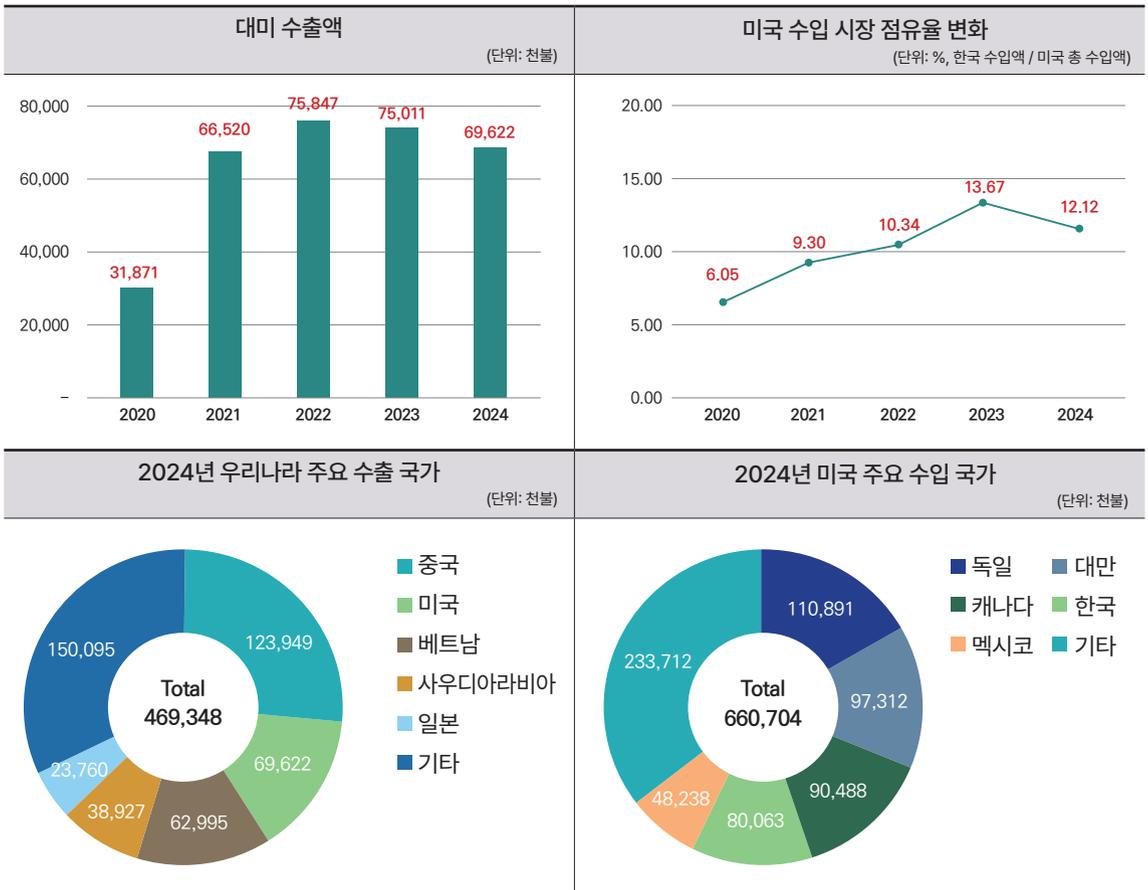
사례명	<b>PBAT 컴파운드</b>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41500 (2024.08.14.)
사실관계	중국산 PBAT, 태국산 PLA, 인도 또는 파키스탄산 Talc를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에서 한국산 CaCO3와 혼합, 냉각, 절단, 제습, 건조하여 PBAT 컴파운드 생산
쟁점 및 판정	<b>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b> • 중국산 PBAT가 PBAT 컴파운드의 70%를 구성하는 핵심 재료이며, 한국에서 다른 재료들과 혼합된 이후에도 그 기능이나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등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PBAT 컴파운드의 원산지를 핵심 재료인 PBAT의 원산지인 중국으로 판정함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3907.99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or 6.5%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제3907.99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 례 명** [PBAT 컴파운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41500 (2024.08.14.)

**사실관계**

요청자	LG Chem		
제품명	• 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PBAT) Compound		
제품 구성	구성요소	구성비율	원산지
	PBAT	70%	중국산
	PLA	10%	태국산
	CaCO <sub>3</sub>	15%	한국산
	Talc	5%	인도산 또는 파키스탄산
용도	• 비닐봉투, 멀칭필름(농업용), 식품 포장용		
원재료 HTSUS	• 3907.99 (PBAT Neat)		
완제품 HTSUS	• 3907.99.5050		

제조과정



상세공정

1. 중국산, 태국산, 인도산 또는 파키스탄산 원재료를 한국으로 수입
2. 한국 제조공정
  - (1) 수입 원재료들과 기타 첨가제를 계량 후 믹서로 혼합
  - (2) 한국산 CaCO<sub>3</sub>를 계량하여 별도의 사이드 호퍼에 투입
  - (3) 혼합물은 압출기의 메인 피더로, 한국산 CaCO<sub>3</sub>는 사이드 피더로 넣고 지정된 온도와 압력 하에서 균일하게 혼합
  - (4) 결과물 냉각 후 균일한 크기의 펠릿으로 절단
  - (5) 제습 및 건조
  - (6) 검사 후 지정된 중량 단위로 포장
3. 미국 수출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 판정 결과

☐ 중국산 PBAT가 PBAT 컴파운드의 70%를 구성하며, 한국에서의 공정 이후에도 HTSUS나 CAS 번호가 유지되고, 다른 재료들과 혼합되어 기능이 향상될 뿐 기능도 용도도 변경되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음

☐ PBAT 컴파운드의 원산지는 PBAT의 원산지인 중국임

## 기타 의견

☐ 해당 제품은 HTSUS, Chapter 99, Subchapter III, Note 20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므로 수입 시 기본 세번 외에 Chapter 99에 따른 세번인 9903.88.02도 함께 신고해야함

##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PBAT 컴파운드의 원산지는 중국임

### Ⅲ 시사점

- 혼합 공정이 화학적 반응을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 혼합 공정에 해당하고, 해당 사례와 같이 특정 구성 요소의 비중이 크고 그 성질이 핵심적일 경우, 해당 구성 요소의 원산지가 최종 제품의 원산지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음

###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1500 (2024.08.14.), <https://rulings.cbp.gov/ruling/N341500>
-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5

글리신

요약

사례명	<b>글리신</b>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40424 (2024.09.10.)
사실관계	중국산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를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에서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수용액에 한국산 염산을 첨가하여 산성화되며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 글리신 생산
쟁점 및 판정	<b>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b> 글리신은 산성화되며 발생하는 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별개의 화학물질로서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또는 염산과 CAS 번호가 다르며 명칭, 성질, 용도가 변화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므로 산성화 등의 공정을 수행한 한국을 원산지로 판정함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sup>4)</sup>

**사 례 명** [글리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40424 (2024.09.10.)

**사실관계**

<b>요청자</b>	U.S. Pharmatech Inc. (대리인: D and A Customs Services Inc.)	
<b>제품</b>	<b>제품명</b>	• Glycine (CAS No. 56-40-6)
	<b>구성</b>	•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중국산) • 염산 (한국산)
	<b>용도</b>	• 감미료로 사용
	<b>완제품 HTSUS</b>	• 2922.49.4300

제조과정



- 상세공정**
1. 중국산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magnesium bisglycinate, CAS No. 14783-68-7)를 한국으로 수입
  2. 한국에서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수용액에 한국산 염산(hydrochloric acid, CAS No. 7647-01-0)을 첨가하여 산성화되며 발생하는 화학 반응으로 글리신 생산
  3. 미국 수출

4) 해당 HS Code에 따른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품목 개요 미제공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및 분석

1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판정 결과

- ☑ 글리신은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수용액에 염산을 첨가하여 발생한 화학 반응으로 생성된 별개의 화학물질로서 원재료들과 CAS 번호가 다르고 감미료로 사용되는 등 명칭, 성질, 용도가 변화하였으므로 해당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공정을 수행한 한국이 원산지임

##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표시 목적상 글리신의 원산지는 한국임

## Ⅱ 시사점

- 화학 반응을 통해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경우, 단순한 혼합이 아닌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어 해당 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로 판정될 수 있음

## Ⅲ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0424 (2024.09.10.), <https://rulings.cbp.gov/ruling/N34042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case  
6

## 회전의자

### 요약

사례명	<b>회전의자</b>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45246 (2025.01.31)
사실관계	플라스틱 팔걸이, 캐스터 등 중국산 부품들을 멕시코로 수입한 후, 멕시코에서 재단, 봉제, 조립 등의 공정을 통해 회전의자 생산
쟁점 및 판정	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멕시코에서 행해진 공정으로 인해 중국산 개별 부품들은 상위의 구성 요소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전혀 다른 상업적 물품인 회전의자로 변경되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판정사례<sup>5)</sup>

**사례명** [회전의자]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45246 (2025.01.31)

**사실관계**

요청자	Veyer LLC		
제품명	• WP1000 Mesh Chair (SKU# 604924)		
제품	구성	원산지	구성요소
		중국산	메쉬 직물(폴리에스터), 플라스틱 폼(폴리우레탄), 플라스틱 팔걸이, 플라스틱 캐스터, 금속 시트 플레이트, 금속 가스리프트, 금속 볼트, 금속 조립 하드웨어
		멕시코산	플라스틱 등받이 프레임, 시트 프레임, 플라스틱 스위블 베이스, 라벨, 포장재
용도	• 높이 조절이 가능한 1인용 회전의자		
완제품 HTSUS	• 9401.39.0010		

## 제조과정



## 상세공정

- 중국산 부품들을 멕시코로 수출
- 멕시코 제조 공정
  - 사출성형 기계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등받이 프레임 등 추가 부품들 제작
  - 중국산 메쉬 직물을 재단 및 봉제하여 의자 등받이 및 기초 부품으로 제작
  - 네일 건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추가 부품 조립
  - 추가 제조, 검사 후 미조립 상태로 포장
- 미국 수출

5) 해당 HS Code에 따른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품목 개요 미제공

**쟁점사항**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중국산 개별 부품들은 멕시코에서 결합, 압착, 형상 절단, 봉제 및 조립 등의 공정을 통해 더욱 상위의 구성 요소로 통합되며, 이를 통해 기존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상업 물품인 회전외자로 명칭, 성질 및 용도가 변경되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결론**

✓ 제301조 적용 목적상 원산지는 멕시코이므로 제301조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II 시사점**

- 최종 제품 생산을 위해 하위 구성 요소들이 여러 공정을 거치며 통합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5246 (2025.01.31), <https://rulings.cbp.gov/ruling/N345246>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7

가습기

요약

사례명	<b>가습기</b> 무역구제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2841 (2025.09.23.)
사실관계	한국에서 생산된 초음파 네블라이저와 컨트롤러를 중국으로 수입한 후, 중국에서 다른 중국산 부품들과 최종 조립하여 가습기 생산
쟁점 및 판정	① 무역구제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네블라이저와 컨트롤러는 가습기에 성질을 부여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한국에서 SMT 등 복잡한 공정을 통해 제작되었고, 중국에서의 공정 이후에도 사전에 결정된 용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가습기의 원산지를 핵심 부품의 생산국인 한국으로 판정함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판정사례<sup>6)</sup>

**사 례 명** [가습기] 무역구제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2841 (2025.09.23)

**사실관계**

**요청자** Crane USA Inc., (대리인: Jo-Anne Daniels DBA Trade Resources & Associates)

<b>제품명</b>	• Cool Mist Humidifier
<b>제품 구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음파식 네블라이저 (한국산)</li> <li>• 컨트롤러 (한국산)</li> <li>• 손잡이, 물탱크, 밸브 나사, 팬, 너트, 어댑터 등 (중국산)</li> <li>• 상부 커버 어셈블리</li> <li>• 최소/최대 조절 장치</li> <li>• 녹색 LED 작동 표시등</li> <li>• 적색 LED 저수위 표시등</li> </ul>

**제조과정**



**01**

한국산 네블라이저와  
컨트롤러 중국 수입



**02**

중국에서  
최종 조립 및 포장



**03**

미국 수출

**상세공정**

1. 한국에서 초음파 네블라이저 제작
  - 정밀한 환경 하에서 안정적 공진, 물방울 크기 제어 등을 위한 가공 공정 및 표면 처리 공정, 품질 관리 및 테스트 등의 공정이 수행됨
2. 한국에서 컨트롤러 제작
  - SMT를 활용한 정밀 부품 장착, 기능 및 안전 테스트, 표면 코팅 등의 공정 수행
3. 한국산 초음파 네블라이저 및 컨트롤러 중국으로 수입
4. 중국 제조공정
  - (1) 커버, 손잡이, 물탱크, 탱크 커버, 콕, 밸브 나사 등 나머지 구성 부품 제작
    - 플라스틱 부품 사출성형, 성형품 검사, 플라스틱 표면에 실크스크린 또는 레이저 프린트 적용 공정 포함

6)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2) PCB 제어판, 금속 나사 어셈블리, 팬, 초음파식 네블라이저를 베이스 유닛에 조립
  - (3) 베이스 유닛 및 전원 어댑터에 대한 고전압 절연 시험
  - (4) 조립된 유닛에 대한 기능 품질 검사
  - (5) 물탱크 상부와 하부의 초음파 용접 및 완전 조립된 물탱크에 대한 누수 검사
  - (6) 모든 부품 최종 세척 및 완전 조립 후, 소매용 박스와 운송용 마스터 카톤에 포장
5.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무역구제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무역구제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 및 기타 현행 무역구제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분석이 적용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요청자에 따르면 네블라이저는 전기 에너지를 초음파를 통한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고 정밀한 공진 조율을 통해 미세한 물방울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컨트롤러는 고주파 구동 신호 및 시스템 제어를 통해 안정적인 초음파 발진, 전력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함

☑ 가습기에 제품의 성질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품은 네블라이저와 컨트롤러로 한국에서 SMT 공정을 포함한 복잡하고 의미 있는 수준의 제조·조립 공정을 통해 제작되며, 중국으로 수입되기 이전부터 사전 결정된 용도는 중국에서의 공정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가습기의 원산지는 한국임

## Ⅱ 시사점

- 복잡한 공정을 통해 타국에서 제조된 핵심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및 기타 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할지라도, 수입된 핵심 부품의 명칭, 기능 및 용도 등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 Ⅲ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2841 (2025.09.23.), <https://rulings.cbp.gov/ruling/N352841>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8

## 저전압 케이블

### 요약

사례명	<b>저전압 케이블</b>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3664 (2025.09.30.)
사실관계	중국에서 인발, 어닐링, 연선 공정으로 제작한 알루미늄 와이어 도체를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에서 압출, 번들링, 절연 처리 등의 공정을 통해 3종의 저전압 케이블 생산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중국산 도체는 저전압 케이블이 전기 전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구성 요소로서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고, 한국에서 행해진 절연 처리 및 기타 공정은 단순 공정으로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전압 케이블의 원산지는 도체의 원산지인 중국임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판정사례<sup>7)</sup>

**사 례 명** [저전압 케이블]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3664 (2025.09.30.)

**사실관계**

요청자	Korea Customs Service (Busan Regional Customs)	
제품	제품명	• low voltage power cables (품목명: XHHW, SER, MC)
	구성	• 알루미늄 와이어 도체, 섬유 테이프, 알루미늄 테이프 실드 등
	용도	• XHHW 케이블: 변전소,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산업 및 상업용 전력 공급 • SER 케이블: 주거 및 상업용 건물 내부 전력 공급 • MC 케이블: 상업용 건물 및 산업 시설 내 전기 배선

제조과정



- 상세공정**
- 중국에서 인발, 어닐링, 연선 공정으로 생산된 알루미늄 와이어 도체를 한국으로 수입
  - 한국 제조 공정
    - XHHW 케이블: 압출 공정을 통해 가교 폴리에틸렌(XPLE) 절연 처리하여 완성
    - SER 케이블: 2~4개의 XHHW 케이블 코어를 절연 압출, 번들링한 후 섬유 테이프로 감싸고 PVC 절연 압출 공정을 통해 완성
    - MC 케이블: 2개 이상의 XHHW 케이블 코어를 절연 압출, 번들링한 후 알루미늄 테이프 실드로 감싸 완성
  - 완성된 케이블 검사 후 포장
  - 미국 수출

7)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및 추가 관세에 따른 현행 무역구제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분석이 적용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중국산 도체는 저전압 케이블이 전기 전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구성 요소로서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고, 한국에서 행해진 절연 처리 및 기타 공정은 단순 공정으로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전압 케이블의 원산지는 도체의 원산지인 중국임

**결론**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저전압 케이블의 원산지는 중국임

**II 시사점**

• 전기 케이블의 경우 절연 공정은 단순한 공정으로 파악되며, 본질적 성질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 요소인 도체의 생산국이 원산지로 판정될 수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3664 (2025.09.30.), <https://rulings.cbp.gov/ruling/N353664>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9

베어링 셀

요약

사례명	<b>베어링 셀</b>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5135 (2025.11.10.)
사실관계	중국산 강판을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에서 절단, 가공, 그루빙 등의 공정을 통해 최종 제품인 베어링 셀을 생산(필요한 경우 한국산 하우징에 삽입)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국산 강판은 한국에서의 절단, 가공, 그루빙, 드릴링 공정을 통해 평축 베어링으로 기능하는 셀로 명칭, 성질 및 용도가 모두 변화하므로 한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li><li>• 베어링 셀이 하우징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셀을 하우징에 삽입하는 것은 단순 공정에 불과하나, 하우징의 원산지 또한 한국이므로, 하우징이 포함된 베어링 셀의 원산지 또한 한국임</li></ul>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판정사례<sup>8)</sup>

**사 례 명** [베어링 셸]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5135 (2025.11.10.)

**사실관계**

요청자	Hansung Co., Ltd.	
제품명	• Bearing shells (부품 번호: HFZLQ18-200, HFNLK22-225, HFNLB28-280)	
제품 구성	• 각 셸은 두 개의 반원통형 구조(상부 및 하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샤프트 또는 액슬이 셸의 중심 보어에 삽입되면 그 표면을 따라 오일이 순환하는 구조임	
용도	• 전동기, 발전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제조과정



상세공정

1. 중국산 강판을 한국으로 수입
2. 한국 제조 공정
  - (1) U자형으로 레이저 절단
  - (2) 측면, 내부, 외부 표면이 동심 정렬을 이루도록 기계 가공
  - (3) 그루빙 공정을 통해 윤활유 경로 형성
  - (4) 드릴링 공정을 통해 상·하부 섹션을 고정할 수 있는 구조 형성
  - (5) 완성된 상·하부 섹션에 도금 처리
  - (6) 다웰 핀과 볼트를 사용하여 상·하부 체결
  - (7) (하우징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 하우징에 베어링 셸 삽입 및 회전 방지 핀으로 고정
3. 각 베어링 셸 검사 후 포장

8)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및 추가 관세에 따른 현행 무역구제조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 중공산 강판은 한국에서의 절단, 가공, 그루빙, 드릴링 공정을 통해 평축 베어링으로 기능하는 셸로 명칭, 성질 및 용도가 모두 변화하므로 한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
- ☑ 베어링 셸이 하우징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셸을 하우징에 삽입하는 것은 단순 공정에 불과하나, 하우징의 원산지 또한 한국이므로, 하우징이 포함된 베어링 셸의 원산지 또한 한국임

##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베어링 셸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한국임

## Ⅲ 시사점

- 강판과 같은 반제품을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산업용 혹은 공업용 제품으로 가공하는 공정이 일국에서 수행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가능함

Ⅲ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5135 (2025.11.10.), <https://rulings.cbp.gov/ruling/N355135>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10

## 래칫 타이 다운

### 요약

사례명	<b>래칫 타이 다운</b>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5742 (2025.11.14.)
사실관계	한국산 폴리에스터 원사, 중국산 래칫 메커니즘 및 후크를 뉴질랜드로 수입한 후, 원사를 직조 및 절단하여 웨빙 스트랩을 만들고, 이를 래칫 메커니즘 및 후크와 조립하여 래칫 타이 다운 생산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래칫 타이 다운에 본질적 성질을 부여하는 웨빙 스트랩은 한국산 원사를 사용하여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며 중국산 래칫 메커니즘과 후크를 단순 조립한 이후에도 웨빙 스트랩으로서의 명칭, 성질, 용도를 유지하므로 래칫 타이 다운의 원산지는 웨빙 스트랩의 원산지인 뉴질랜드임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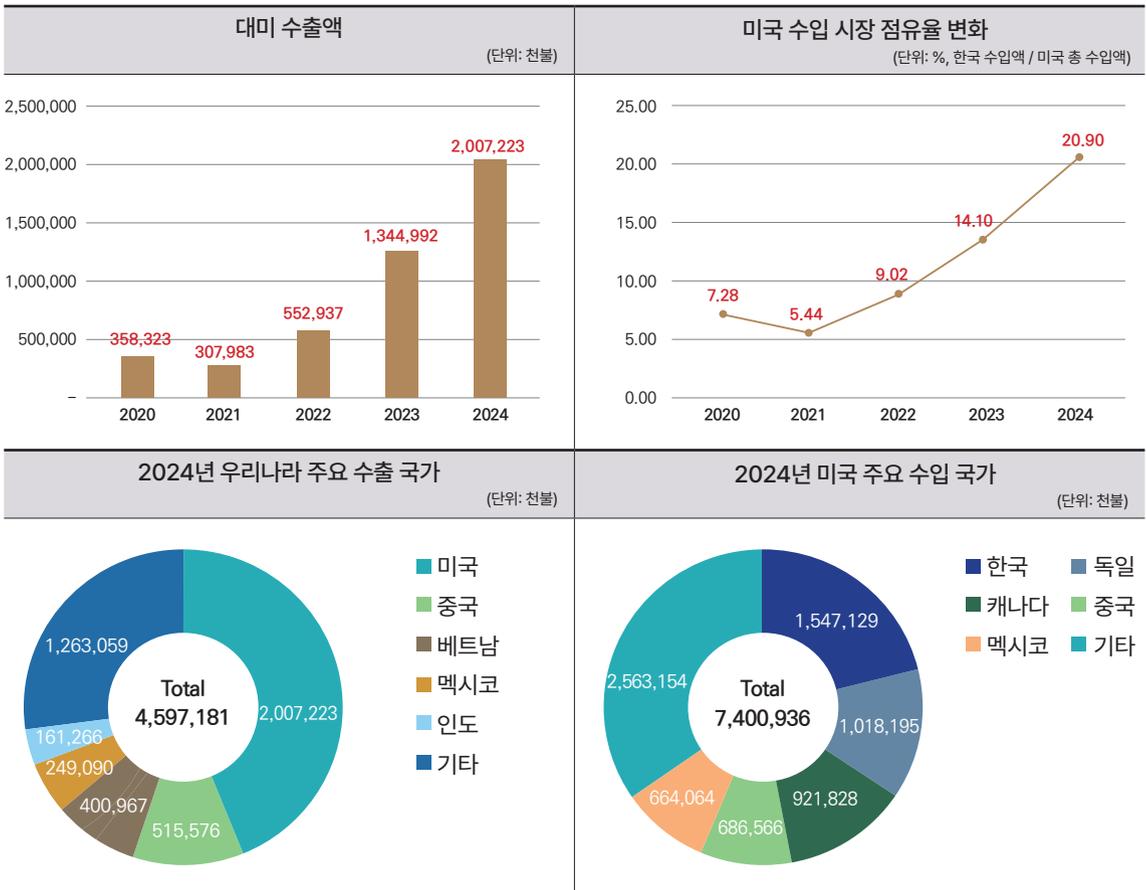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479.89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or 2.5% or 2.8%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시장정보

제8479.89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 례 명** [래칫 타이 다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5742 (2025.11.14.)

**사실관계**

요청자	Aerofast Tiedowns Ltd.	
제품	제품명	• a pair of two marine transom tie down straps (품목번호: TRHH-1.5-4)
	구성	• 레버 핸들이 포함된 기어 및 폴 타입의 래칫 메커니즘 •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직조 웨빙 스트랩 2개 • 고무 코팅된 금속 S-후크 2개
	용도	• 보트를 트레일러에 고정
	완제품 HTSUS	• 8479.89.9599

제조과정



**상세공정**

1. 한국산 폴리에스터 원사, 중국산 래칫 메커니즘 및 후크를 뉴질랜드로 수입
2. 뉴질랜드 제조 공정
  - (1) 직조기를 사용해 한국산 폴리프로필렌 원사를 웨빙 스트랩으로 직조한 후 일정 길이로 절단 및 단부 봉합 처리
  - (2) 재봉기를 사용해 중국산 래칫 메커니즘과 후크를 웨빙 스트랩에 조립
  - (3) 최종 제품을 수출용 상자에 포장
3.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CBP는 유사한 원산지판정 사례에서 래칫 타이 다운 스트랩과 같은 제품의 본질적 성질은 웨빙 스트랩에 의해 부여된다고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5503 (2020.02.20.)*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43501 (2024.11.22.)*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16901 (2021.02.04.)*

판정 결과

- ☐ 래칫 타이 다운에 본질적 성질을 부여하는 웨빙 스트랩은 한국산 원사를 사용하여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며 중국산 래칫 메커니즘과 후크를 단순 조립한 이후에도 웨빙 스트랩으로서의 명칭, 성질, 용도를 유지하므로 래칫 타이 다운의 원산지는 웨빙 스트랩의 원산지인 뉴질랜드임

결론

- ✓ 래칫 타이 다운의 원산지는 제품에 본질적 성질을 부여하는 웨빙 스트랩을 생산한 뉴질랜드임

II 시사점

- 래칫 타이 다운과 같이 특정 섬유로 제작되어 물건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물품을 고정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스트랩이 생산된 국가가 원산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 Ⅲ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5742 (2025.11.14.), <https://rulings.cbp.gov/ruling/N355742>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CBP Ruling HQ H305503 (2020.02.20.), <https://rulings.cbp.gov/ruling/H305503>
- CBP Ruling NY N343501 (2024.11.22.), <https://rulings.cbp.gov/ruling/N343501>
- CBP Ruling NY N316901 (2021.02.04.), <https://rulings.cbp.gov/ruling/N316901>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ORIGIN CASE

Vol. 10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